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2023. 4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4. 6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4. 25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)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조례에 대한 규정은 당연 준용 사항임으로 불필요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나.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초·중·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라 차상위계층 자녀의 고등학생 수업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다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개정에 따라 준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당연 준용 조항 삭제(안 제1조)
- 나. 차상위계층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조항 삭제(안 제4조)
- 다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개정(안 제5조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(2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10조의 2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.

제60조의 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“교육비”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3. 3. 6.~2023. 3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5. 검토의견

-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용으로 한 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‘법’) 개정안이 2019년 12월 3일부로 공포된 바 있음¹⁾. 이는 고등학교까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,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중이고 고등학교 진학률 및 재학률이 90%를 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안한 법률 개정이라고 사료됨

<표> 최근 3년간 고교 진학률 및 재학률 현황(2017년 기준)

(단위: %)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3년 평균
진학률	99.7	99.7	99.7	99.7
재학률	93.6	93.7	93.5	93.6

※ 출처: 교육부

- 다만 법 개정 당시 전면적 무상교육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교육비 지원범위 결정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일부개정 필요성 등 재원방안 검토를 비롯하여 법규명령 신설 기간 등을 감안한 순차적 실시를 명시한 바,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음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입학금
2. 수업료
3. 학교운영지원비
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-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중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수업 지원 조항은 실효력이 없고 중복지원 등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는 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
 - 이외에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등을 수정하는 내용인 바,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
- ※ 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의무교육 대상은 아닌 바,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면 「근로기준법」상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직종이 제한되고²⁾,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역시 응시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어³⁾, 학업 대신 진로탐색을 일찍 시작하려는 학생의 학업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임.

2) 「근로기준법」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

- 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(職種)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3)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16조(응시연령)

-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
 1. 7급 이상: 20세 이상
 2. 8급 이하: 18세(교정·보호 직렬은 20세) 이상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4. 6.
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
제 출 부 서 : 복지정책과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조례에 대한 규정은 당연 준용 사항임으로 불필요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나.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초·중·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라 차상위계층 자녀의 고등학생 수업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다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개정에 따라 준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당연 준용 조항 삭제(안 제1조)
- 나. 차상위계층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조항 삭제(안 제4조)
- 다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(2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10조의 2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.

제60조의 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“교육비”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3. 3. 6.~2023. 3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3호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(대학원생은 제외)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은 등록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다.
제5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지원내용)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제3호 교육 관련 지원액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(대학원생은 제외)에 대한 등록금 및 교육 관련 경비. 다만,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</p> <p>9. ~ 11.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조(지원내용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 <p>8. ~ 10. (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3호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(대학</p>

원생은 제외)에 대한 교육관련
지원은 등록금 등 구청장이 필
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
다.

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 등) ① 지원
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기간, 지원
수준,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
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「서울
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
의체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른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
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로
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② (생략)

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 등) ① --

----- 「서울특
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
체 운영 조례」 제5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최의혜(02-3423-5772)